

대 구 지 방 법 원

제 1 1 민 사 부

판 결

사 건 2008가합454 손해배상(자)

원 고 1. 1 (66 [redacted])
2. 2 (85 [redacted])
3. 3 (94 [redacted])

원고들 주소 대구 동구 신천동 [redacted]

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[redacted]

담당변호사 [redacted]

피 고 포항시

대표자 시장 박승호

소송대리인 변호사 [redacted]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[redacted]

변 론 종 결 2008. 12. 16.

판 결 선 고 2009. 1. 13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 1에게 51,754,159원, 원고 2, 3에게 각 14,298,230원 및 각 이에 대해

여 2007. 9. 6.부터 2009. 1. 13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 1/3은 원고들이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 1에게 81,798,996원, 원고 2, 3에게 각 20,534,31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7. 9. 6.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당사자의 지위

원고 1은 망 박○○(이하 '망인'이라고 한다)의 처, 원고 2, 3은 망인의 자녀이고, 피고는 포항시 북구 청하면 미남리에 있는 청하교 앞 면도 102호 및 청하교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.

나. 교통사고의 경위

1) 망인은 2007. 9. 5. 20:05경 [REDACTED]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조수석에 원고 1을 동승시키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청하면 미남리 앞 면도 102호 도로(이하 '이 사건 도로'라고 한다)를 덕성리 방면에서 청하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위

승용차 앞범퍼부분으로 청하교 우측 교각을 들이받는 사고(이하 '이 사건 사고'라고 한다)를 내었다.

2) 위 사고로 망인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고, 원고 1은 좌슬개골 개방골절, 좌비골 신경손상, 제2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4호증, 갑 제8호증의 1 내지 4, 17 내지 19의 각 기재, 갑 제5호증의 1 내지 4, 갑 제8호증의 5 내지 15의 각 영상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손해배상책임의 발생

가. 당사자의 주장

원고들은 이 사건 도로의 점유·관리자인 피고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, 이 사건 도로는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가 있어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, 피고에 대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중 망인의 과실 비율인 60%를 공제한 금액의 배상을 구함에 대하여, 피고는 주의의무 위반 또는 이 사건 도로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가 없으며,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툰다.

나. 관련 법령

이 사건 사고 당시 시행중이던 도로법(2007. 12. 21. 법률 제87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39조 제1항은 '도로의 구조 및 시설과 도로의 유지·안전점검 및 보수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'고 규정하고 있고, 이에 따라 제정된 건설교통부령인 도로의 구조·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 제1항은 '교통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횡단보도육교(지하횡단보도를 포함한다), 교통안전표지, 방

호울타리, 조명시설, 시선유도시설, 표지병, 도로반사경, 충격흡수시설 및 과속방지시설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'고 규정하고 있고, 제38조는 '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도모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안내표지, 긴급연락시설, 도로교통정보안내시설, 과적차량검문소, 교통감시시설 등의 교통관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'고 규정하고 있다.

다. 인정사실

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호증의 1 내지 4, 을 제2호증의 각 기재,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, 이 법원의 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1) 이 사건 도로는 포항시 북구 청하리 덕성리에서 청하삼거리(7번국도방향)로 나있는 면도 102호 도로이다.

2) 이 사건 도로에는 이 사건 사고지점인 청하교 후방 약 100미터에 청하중학교로 진입하는 갈림길이 있는데 그 곳에서부터 청하교까지는 완만한 오르막 차로이고, 청하중학교로 진입하는 갈림길에서부터 청하교까지 편도 1차로인지 2차로인지 육안으로는 구별하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다. {원고는 이 사건 도로가 편도 2차로라고 주장하고, 이에 반하여 피고는 이 사건 도로는 편도 1차로이며 이 사건 사고차량이 주행한 도로(이하 '이 사건 사고차로'라고 한다)는 노견이라고 주장한다}

3) 이 사건 사고차로와 1차로는 점선으로 구분되어 있고(피고는 이 사건 사고당시에는 황색점선으로 구분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, 이 사건 검증 당시에는 백색점선으로 구분되어 있었다), 이 사건 사고차로의 폭은 3.0미터, 1차로의 폭은 3.1미터이다.

4) 청하교는 왕복 2차로의 도로로서, 이 사건 사고차로로 곧바로 진행하게 되면 청

하교의 우측 교각과 정면충돌하게 된다.

5) 이 사건 사고지점 후방 87미터 및 160미터 지점에는 각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는데, 과속방지턱은 이 사건 사고차로에까지 이어져 있다.

6)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 사고지점 후방 87미터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을 지난 지점부터 청하교까지 이 사건 사고차로의 노면에는 수개의 화살표로 표시된 차선 변경표시가 되어 있었고, 청하교 후방 약 60미터 지점부터 청하교까지 노면에 안전지대 표시가 되어 있었으며, 2개의 과속방지턱의 중간지점에 점멸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다.

7) 이 사건 사고지점인 청하교 교각 전면에 야광반사판이 설치되어 있었다.

8) 이 사건 사고지점 후방 160미터 지점의 과속방지턱 옆에는 '천천히'란 안내표지판과 요철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다.

9) 이 사건 사고지점 후방 87미터 지점의 과속방지턱 부근의 이 사건 사고차로의 반대차로 쪽으로 가로등이 1개 설치되어 있었고, 청하교에 이르기까지 다른 조명시설은 없었다.

10)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이었고, 사고장소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.

11) 이 사건 사고 이후,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차선 변경표시, 안전지대 등 노면표시를 뚜렷이 보일 수 있도록 페인트로 덧칠하였고, 청하교 부근에 가로등 1개, 노면반사판 및 청하교 난간에 반사판을 설치하였다.

라. 판단

1) 도로나 도로부속물의 설치 또는 관리, 보존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, 도로의 구조, 교통량,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사정 등 도로의 이용상황과 그

본래의 이용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합의 위치,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.

2) 기초사실에 관계규정 및 인정사실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. 즉, ① 이 사건 도로는 덕성리 방면에서 청하중학교로 진입하는 갈림길에 이르기까지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나, 청하중학교로 진입하는 갈림길을 지나면서부터 청하교에 이르기까지의 약 100미터는 점선으로 차로가 구분되어 있고, 양 차로의 폭이 거의 비슷할 뿐만 아니라 과속방지턱이 이 사건 사고차로에 까지 설치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일반 운전자로서는 이 사건 도로가 편도 1차로에서 편도 2차로로 확장되는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. ② 청하중학교로 진입하는 갈림길에서부터 청하교까지는 완만한 오르막길로 되어 있어 운전자로서는 전방에 교량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인식하기는 어려웠다. ③ 이 사건 차로의 노면에는 화살표로 된 차선 변경표시 및 안전지대 표지가 있었으나, 이 사건 사고 이후 차선 변경표시 등을 덧칠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위 표시가 희미하게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,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, 이 사건 도로가 초행길이거나 이 사건 도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 아닌 일반 운전자로서 차선 변경표시를 인식하기가 곤란하였다고 보인다. ④ 피고는 이 사건 사고차로를 노견으로 관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나,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 운전자로서는 이 사건 사고차로가 차선이 확장되는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매우 높으므로, 최소한 차로가 감소한다는 취지의 교통표지판을 운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고, 특히 야간이나 우천으로 시야가 불량한 경우는 표지판이나 페인트로 칠해진 노면 표시만으로는 운전자가 쉽게 이를 알기 어려우므로, 조명시설을 강화하거나 노면에 요철형 장치를 설치하여, 운전자가 이 사건 차로가 차

량이 주행할 수 있는 차로가 아니며 그대로 직진시에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사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. 그러나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정도의 안전 표지 및 시설을 설치했을 뿐이고, 이는 야간이나 우천시에 운전하는 운전자를 위해서는 미흡한 상태였다. ⑤ 그리고 이 사건 사고차량이 충돌한 교각에는 위험을 예고하는 야광반사판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였으나, 충돌에 대비한 충격흡수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.

3) 그렇다면, 비록 청하교 후방 87미터 및 160미터에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고, 점멸신호등 및 '천천히' 등의 교통표지판을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, 이 정도의 안전 시설만으로는 야간 운전자가 이 사건 사고차로가 노견이라거나, 아니면 이 사건 차로가 감소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, 특히 이 사건 사고차로가 끝나는 지점에는 곧바로 충격흡수시설이 없는 교각이 설치되어 충돌로 인한 인명사상의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도로라는 사정까지를 감안하면, 피고에게는 이 사건 도로의 설치·관리와 관련하여 도로교통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통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.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상당 부분은 피고의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,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
마. 책임의 제한

한편,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는지를 예의 주시하면서 차량을 운전하고, 제한속도를 지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. 그런데 강제8호증의 3, 18의 각 기재에 의하면,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사실,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느라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였고, 그 때문에 교각에

충돌하기 직전어야 비로소 이 사건 차로가 차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충돌을 피할 수 없었던 사실,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, 원고 1도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으면서 적시에 망인에게 적절한 경고 내지는 제지를 하지 못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. 이 같은 망인 및 원고 1의 과실과 앞에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, 사고시각, 사고지점의 여건, 당시의 날씨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25%로 제한한다.

3. 손해배상의 범위

가. 망인의 경우

1) 일실수입

가) 망인의 인적사항

성명: 박○○

성별: 남자

생년월일: 1963. 12. 25.

사고일: 2007. 9. 5.

사고 당시 나이 : 43세 8개월 남짓

기대여명: 32.05년(여명종료일 : 2039. 9. 22.)

가동연한 : 만 60세가 될 때까지

가동종료일 : 2023. 12. 24.

나) 직업 및 소득

도시일용노동자, 월 소득은 도시보통인부의 월 소득을 적용하며, 월 가동 일수는 22일로 하고, 망인의 생계비로 그 소득의 1/3씩을 공제한다.

다) 계산(월 미만은 과잉배상을 막기 위하여 중간이자 공제 이전의 월 소득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여 계산하고, 원 미만은 버림, 이하 같다)

(개) 2007. 9. 5.부터 2008. 1. 4.까지 4개월

$$1,295,426\text{원} \times 100\% \times \frac{3}{8} \times 3.9588 = 3,418,888\text{원}$$

(나) 2008. 1. 5.부터 2008. 9. 4.까지 8개월

$$1,332,034\text{원} \times 100\% \times \frac{3}{8} \times 7.7270 (= 11.6858 - 3.9588) = 6,861,751\text{원}$$

(대) 2008. 9. 5.부터 2023. 12. 24.까지 183개월

$$1,397,660\text{원} \times 100\% \times \frac{3}{8} \times 130.8200 (= 142.5058 - 11.6858) = 121,894,587\text{원}$$

(태) 합계 : 132,175,226원 = (가) + (나) + (대)

[인정근거] 다툼없는 사실, 경험칙, 갑 제9호증의 1, 2의 각 기재

2) 책임의 제한

가) 피고의 책임 비율 : 25%

나) 계산 : 132,175,226원 \times 25% = 33,043,806원

나. 원고 1의 경우

1) 일실수입

가) 피해자 인적사항

성명 : 1

성별 : 여자

생년월일 : 1966. 10. 1.

사고일 : 2007. 9. 5.

사고 당시 나이 : 40세 11개월 남짓

기대여명 : 41.33년(여명종료일 : 2039. 9. 22.)

가동연한 : 만 60세가 될 때까지

가동종료일 : 2026. 9. 30.

나) 직업 및 소득

도시일용노동자, 월 소득은 도시보통인부의 월 소득을 적용하며, 월 가동 일수는 22일로 한다.

다) 노동능력 상실률

(가) 2007. 9. 5. ~ 2008. 3. 4. : 100% (입원 기간)

(나) 2008. 3. 5. ~ 가동연한 : 47.2% { 척추손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45%
및 좌측 비골신경부분마비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4%의 중복장해,
[=45% + (100-45)×4%] }

라) 계산

(가) 2007. 9. 5.부터 2008. 1. 4.까지 4개월

$$1,295,426\text{원} \times 100\% \times 3.9588 = 5,128,332\text{원}$$

(나) 2008. 1. 5.부터 2008. 3. 4.까지 2개월

$$1,332,034\text{원} \times 100\% \times 1.9552 (= 5.9140 - 3.9588) = 2,604,392\text{원}$$

(다) 2008. 3. 5.부터 2008. 9. 4.까지 6개월

$$1,332,034\text{원} \times 47.2\% \times 5.7718 (= 11.6858 - 5.9140) = 3,628,846\text{원}$$

(라) 2008. 9. 5.부터 2026. 9. 30.까지 216개월

$$1,397,660\text{원} \times 47.2\% \times 148.3499 (= 160.0357 - 11.6858) = 97,865,687\text{원}$$

(마) 합계 : 109,227,257원 = (가) + (나) + (다) + (라)

[인정근거] 다툼없는 사실, 경험칙, 갑 제9호증의 1, 2의 각 기재, 이 법원의
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정형외과, 대구카톨릭대학병원 신경외과에 대한 각 신체
감정촉탁 결과

2) 장례비

3,000,000원(다툼없는 사실)

3) 향후치료비

1,000,000원(좌측 슬개골골절 치료시 사용하였던 나사못 제거술에 소요되는 비용)

[인정근거] 이 법원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정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

4) 개호비

원고들은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1개월간의 개호비 1,766,490원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나,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개호비를 지출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,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.

5) 책임의 제한

가) 피고의 책임 비율 : 25%

나) 계산 : (일실수입 109,227,257원 + 장례비 3,000,000원 + 향후치료비 1,000,000원) × 25% = 28,306,814원

다. 위자료

가) 참작한 사유 : 나이, 가족관계, 이 사건 사고의 경위, 망인의 과실 정도,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

나) 결정금액

망인 : 10,000,000원

원고 1 : 5,000,000원

원고 2, 3 : 각 2,000,000원

라. 상속

(1) 상속대상금액 : 합계 43,043,806원 (= 망인의 재산상 손해 33,043,806원 + 망인의 위자료 10,000,000원)

(2) 상속인 : 원고들(위 1. 가. 참조)

(3) 계산 :

(가) 원고 1 : 18,447,345원 (= 43,043,806원 × 3/7)

(나) 원고 2, 3 : 각 12,298,230원 (= 43,043,806원 × 2/7)

마. 소결론

따라서, 피고는 원고 1에게 51,754,159원 (= 상속분 18,447,345원 + 재산상 손해 28,306,814원 + 위자료 5,000,000원), 원고 2, 3에게 각 14,298,230원 (= 상속분 12,298,230원 + 위자료 2,000,000원)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다음날인 2007. 9. 6.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9. 1. 13.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4. 결 론

그렇다면,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김성수 _____

 판사 배성중 _____

 판사 이광현 _____